

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(김동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46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3. 10. 24.

발 의 자 : 김동수, 김동규, 김영철, 김정택,
김철진, 나정숙, 박영근, 박은경,
성준모, 송두영, 신성철, 윤미라,
윤태천, 이민근, 이형근, 전준호,
정승현, 정진교, 한갑수, 함영미,
황효진의원 (21인)

□ 개정이유

- 「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겸임하고,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상시운영 가능하도록 개정함. (안 제2조)
- 윤리특별위원회 기능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심사기능과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 심사기능을 포함함.(안 제3조)

□ 개정 규칙안 : 덧붙임

□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□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□ 기타 참고사항

-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.
-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(현행) -- [별첨1]
- 「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」을 참고 하였음. --- [별첨2]

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「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“라 한다) 제7조제5항” 을 “「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7조의2”로 하고, “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” 를 “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구성)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겸임하며,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능) ①위원회는 안산시의회 의원(이하 “의원“이라 한다)이 「안산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」, 「안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」 규정을 위반하여 안산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“이라 한다)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하였을 때에 이를 심사 보고 한다.
③ 위원회는 의장이 「안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70조, 제71조, 제82조에 따른 자격심사 또는 징계심사안을 회부하였을 때에 이를 심사 보고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2월 이내에” 를 “2개월 이내에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조례상의 위원회의 예에 준한다.” 를 “「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”로 한다.

제8조중 “각 호의 1에” 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” 로 한다.

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1조제1항 후단 “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의장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.” 를 삭제하고,
제11조제2항 중 “위원장의 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” 를 “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「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2조(구성) ①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9인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"위원장"이라 한다)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</p> <p>③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④위원회에 간사(이하 "간사"라 한다) 1인을 두되,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</p> <p>⑤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</p> <p>⑥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.</p>	<p>제2조(구성)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겸임하며,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.</p>
<p>제3조(임기) ①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7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 다만,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임기) <삭 제></p>
<p>제4조(기능) ①위원회는 안산시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이 「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」 규정을 위반하여 안산시의회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이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안을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보고 한다.</p>	<p>제4조(기능) ① 「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」, 「안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」 규정을 해당 회부하였을 때에.....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② 위원회는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<u>당해</u>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통고할 수 있다.</p> <p>③ <신 설></p> <p>제6조(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 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윤리심사 회부가 있는 날부터 <u>2월 이내에</u> 그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.</p>	<p>②<u>해당</u>.....</p> <p>③ 위원회는 의장이 「안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70조, 제71조, 제82조에 따른 자격심사 또는 징계 심사안을 회부하였을 때에 이를 심사 보고한다.</p> <p>제6조(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의 시한 등)</p> <p>① ~ 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<u>2개월 이내에</u>.....</p>
<p>제7조(소위원회)</p> <p>①~② 생략</p> <p>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, 소위원회의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<u>조례상의 위원회의 예에 준한다</u>.</p>	<p>제7조(소위원회)</p> <p>①~② 현행과 같음</p> <p>③<u>「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」</u>를 따른다.</p>
<p>제8조(위원회 개회의 통지)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(위원회 개회의 통지).....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</u>.....</p>
<p>제11조(발언 및 변명) 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심사대상의원은 의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</u>.</p> <p>②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원장을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.</p>	<p>제11조(발언 및 변명) ①<u><삭 제></u></p> <p>②<u>허가를</u> <u>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</u> <u>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</u></p>